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서완석

##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4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조례 제정 이후 수 차례의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, 조문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(안 제2조 및 제3조)

- (기능)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심의
- (구성)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구성

나. 소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(안 제5조 및 제7조)

- (구성) 소위원회는 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
- (임기)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

다.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용어 수정

- '건설기술용역업자' → '건설기술용역사업자'

## 5. 검토내용

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조례 제정 이후 수 차례의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, 조문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.
- 안 제2조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의하도록 함.
- 안 제4조 및 제5조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상세하게 규정함.
- 안 제9조는 위원회 심의 요청 후 관계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10조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사 전문분야 위원이 심의하도록 하고, 사업 시행이 시급한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게 규정하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게 규정함.
- 안 제14조는 심의요청에 따른 회의안건이 한 차례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- 입법예고('20. 3. 12.~'20. 4. 2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# 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조례 제정 이후 수 차례의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, 조문의 체계 등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